
나노코리아 2023 유공자 포상 안내

2023. 5.

나노코리아 조직위원회

□ 배경 및 취지

- 나노융합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나노코리아 어워드를 통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함

□ 자격기준

- 대상 : 산업발전 유공자
 -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및 기술, 기능발전에 기여한 자
 - 나노 관련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자
 - 나노융합 우수제품을 개발하거나, 제품 국산화에 기여한 자
 - 기술·품질혁신,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
 -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 등에 공헌한 자
 - 기타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

□ 포상일 및 장소

- 일시 : 2023년 7월 5일(수) 오전
- 장소 :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內 공식행사장

□ 포상 종류

- 정부포상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점

□ 신청대상

- 기업체 대표(임원)는 나노 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나노융합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자
 - 기술개발, 품질향상, 수출증대, 수입대체,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
-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나노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·품질혁신, 신기술 개발,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
-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나노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·품질혁신, 신기술 개발,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
-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는 나노융합산업 관련기관, 학계/단체의

-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
- 산업정보제공, 인프라 구축, 시장개척, 생산성 향상, 정책 및 기획, 학술연구, 인력양성,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
-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

□ 추천 제한 대상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-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□ 포상심사 기준

가. 산업발전 유공자

- 수공기간 : 총 수공기간 및 신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
- 나노융합산업 기여도
 - 소속업체 공헌도(매출증가율, 수출증가율 등) 및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기여도(특허 획득 건수 등)를 공적조서를 토대로 평가
- 제품 및 기술의 난이도, 파급성, 시장성 등 평가
 - 제품/기술의 관련 산업 기여도 및 개발제품의 가격경쟁력 등 다각적 평가

- 기타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한 항목
 - 나노융합산업 정책개발, 경영발전, 고용창출, 노사화합, 환경관리, 신수요 창출 등에 기여한 사항 등

나. 수상자 선정

- 나노코리아 시상위원회의 심사 후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

□ 접수 기한 및 방법

- 기한 : 2023. 5. 26.(금) 18:00까지
- 방법 :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이메일로 송부(ntrakys@nanokorea.net)

□ 문의처 :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박윤섭 주임

- 연 락 처 : Tel. 031-548-2025 / E-Mail. ntrakys@nanokorea.net
- 주 소 : (1622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(이의동,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) C동 2층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

끝.